

2001년도 중요재산취득(괴정2동사 부지)승인의견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3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코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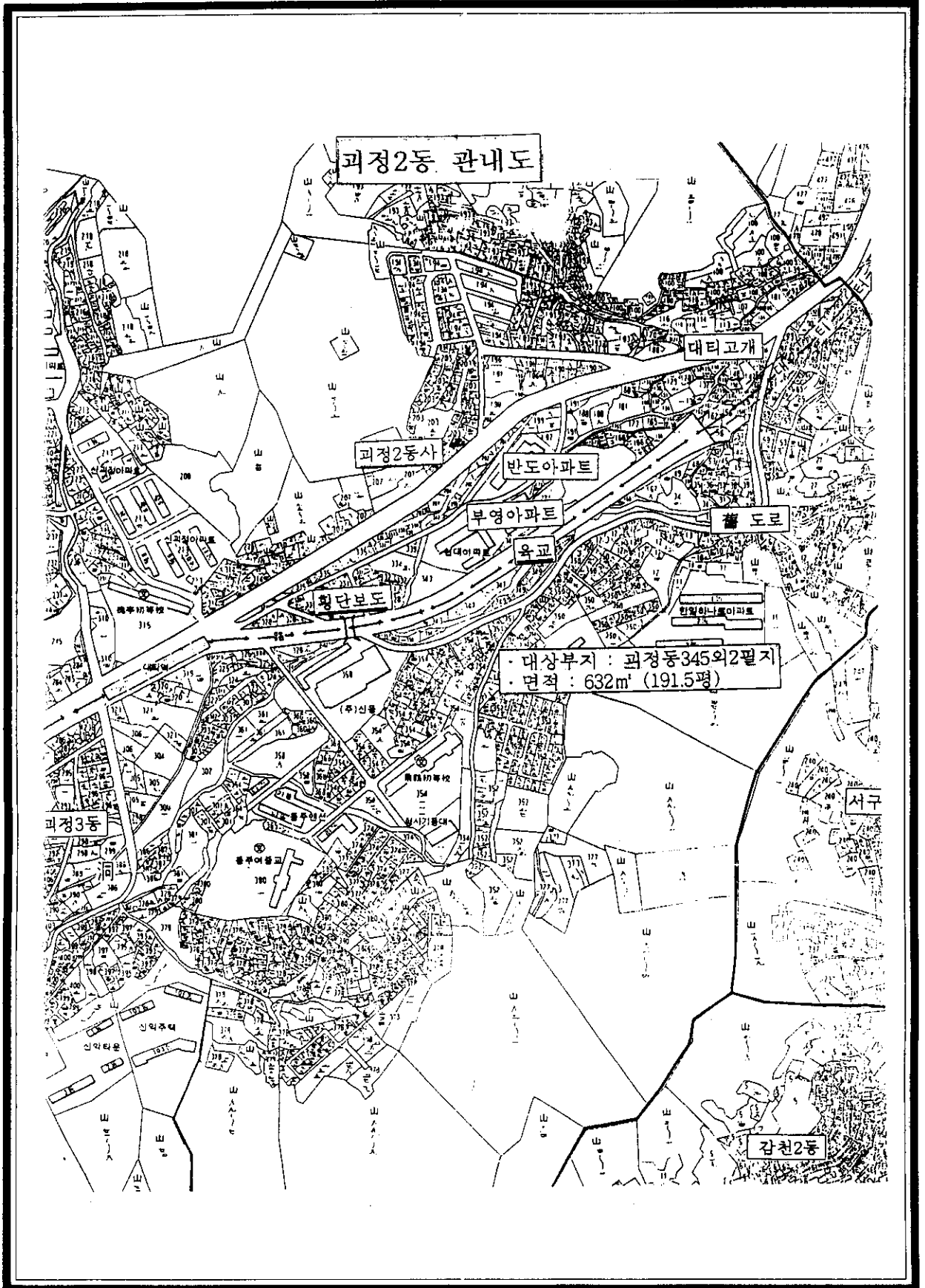
2. 주요골자

(단위 : m²,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 (규모)	지목 (구조)	시설개요	소요예산
괴정2동사 부지 및 지상 건물 매입	계		893.56 (270.5평)			590,000
	토지	괴정동345 외2필지	632 (191.5평)	대,전		535,000
	건물	위 지상	261.56 (79평)	철근콘크리트조, 블럭조	식품가공장, 근린생활시설, 점포	55,000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제35제1항제6호



괴정2동사 부지 매입계획

1. 취득사유

- 현 동사가 '70년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협소로 주민봉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애로
-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및 주차공간 절대부족등 신축 동사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장래 증가하는 행정 수요 등에 대처코자 공유재산 취득(부지매입) 코자 함.

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(단위:m',천원)

재산의 표시	토 지		건 축 물		매입 금액	비고 (용도지역)	
	지번	지목	면적 (평)	구 조 (용 도)			면적 (평)
계			632 (191.5평)		261.56 (79.1평)	· 590,000 (추정가) · 향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	
괴정동 345	대	69 (21평)	블록조 (점포,근린생활)	107.11 (32.4평)			'73신축 (일반주거)
괴정동 354-22,23	대, 전	563 (170.5평)	철콘조,블럭조 (공장,근린생활)	154.45 (46.7평)			'92신축 (일반주거)

3. 추진계획

- 동사부지 매입협의 : 2001. 4월중
- 투자사업 심사 : 2001. 4월중
- 공유재산 취득승인 : 2001. 4월중
- 예산 편성 :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
- 동사부지 매매 계약 체결 : 2001. 7월중
- 동사신축 계획수립 : 2001. 11월중

4. 검토의견

- 현 동사가 노후건물로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협소등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애로로 동민의 숙원인 동사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향후 행정수요 등에 대처코자 공유재산(부지매입등) 취득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

2001년도 중요재산 취득 총괄표(7-1)

(단위㎡,천원)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규모)	지목(구조)	추정가액	취득시기	소유자	비고
괴정2동사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	계		893.56 (270.5평)		590,000	2001. 7월중	괴정2동345 김면환	
	토지	괴정동345외2필지	632 (191.5평)	대,전	535,000			
	건물	상동	261.56 (79평)	철근콘크리트조, 스라브	55,000			

※ 괴정2동사 대상부지(토지) 및 건물의 추정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의뢰

2001년도 취득 재산목록(7-2)

(단위 : m²,천원)

사업명	취득구분	재산의 표시	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	구분	소재지	면적	지목(구조)					
괴정2동사 부지 및 지상건물매입	신규	계		893.56 (270.5평)		590,000	2001. 7월중	괴정2동사 부지매입	사하구	총무과
		토지	괴정동345 괴정동354-22 괴정동354-23	632 (191.5평)	대 대 전	535,000				
		건물	괴정동345 괴정동354-22	261.56 (79평)	철근콘크리트조, 스라브	55,000				

※괴정2동사 대상부지(토지) 및 건물의 추정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의뢰